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
	보도	2019.7.31.(수) 14:00부터	배포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2100-2530)	담 당 자	최 민 혁 사무관(02-2100-2534) 성 보 경 사무관(02-2100-253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정 선 인(02-2100-2841)		김 기 훈 사무관(02-2100-2872) 김 유 란 사무관(02-2100-285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 인 덕(070-4481-9002)		김 세 진 팀 장(070-8873-9005) 성 백 규 과 장(070-8872-9004)

제 목 : 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 금융위·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을 지원 중
 -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1차는 8개사에 총 3.4억원 지원, 2차는 12개사에 총 7.1억원 지원**
- 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테스트비용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 4회에서 **상시접수로 전환**
- 핀테크 지원 예산은 **7월말 기준 37% 집행**하였으며, **테스트비용 지원**이 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 **신속히 집행** 예정
- **핀테크 추경(안) 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및 오픈뱅킹 보안 등을 적극 지원**

1 그간의 경과

□ 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총 79억) 중 40억원이며, 7월말 현재 10.5억원 집행

구 분	금액(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 맞춤형 교육 4.2억원 ·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협력
합 계	79	-	-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 (2차 지원) 접수('19.5.31~6.14) 결과 13개 기업이 신청하여 1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7.1억원 지원* [참고 8 :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2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규모·범위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

가. 기존과 동일한 사항 : 지원대상·규모·범위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내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새로 변경되는 사항 : 접수·심사 일정 [참고 3,4 : 신청방법]

□ (접수)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 3차 지원 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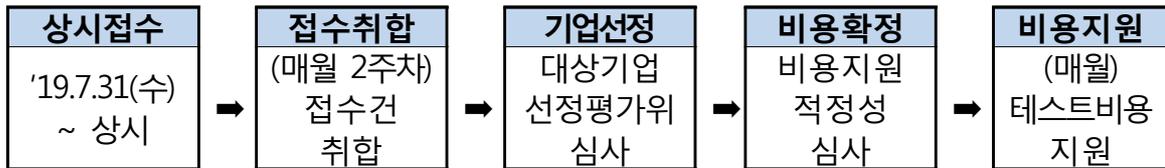
* (현행) 연중 4회(3월, 5월, 7월, 10월) 접수 → (개선) 상시접수('19.7.31~)

○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비용지원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심사) 상시접수된 건을 매월 심사·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지원
 - 매월 2주차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당월 평가·선정 진행
 - (예시) 접수건 취합(~8.16) → 기업선정·비용 심사 진행(8월중) → 비용지원(~8월말)

< 비용지원 상시접수·심사 절차(예시) >



3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 다소 지연*(7월말 기준 37%)되고 있으나,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상시접수 후 1달 내 집행까지 완료) 등 통해 집행을 제고(9월까지 70% 내외) 추진 **[참고 1 :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지연사유) 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 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 총 42건 지정

-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 밀착관리하여 테스트 조기 진행을 독려*

* 다만, 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 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별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 (핀테크지원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	---

참고1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집행현황 및 계획) 7월말 기준 37% 집행, 3/4분기부터 상시접수로 전환된 테스트비용 지원을 중점적으로 신속히 집행해 나갈 계획

< '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현황('19.7월말(예상) 기준) >

내역사업	예산 (억원)	집행실적 (억원)	주요 항목
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14.7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4.9	맞춤형 교육 4.2억원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8.5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④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	1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합 계	79	29.1	

- ① (테스트비용 지원, 40억) 1, 2차 비용지원 대상기업(20개사) 선정 완료·총 10.5억 지원(8월부터 상시접수·지원)
- ②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19억)
 - (맞춤형 교육)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6.11~12.2까지 주제별 신청 접수·교육 실시하며, 현재 50명 이수, 연말까지 120명 교육 추진), 예비창업자·구직자 대상 교육 운영(35명 선발 후 6.25~8.29 교육 중)
 - (핀테크 멘토링) 멘토링 누적 52회 운영 중, 연말까지 150회 추진
 - (해외진출 컨설팅) 1차 대상기업 9개사 선정 후 법률·특허·회계/세무 등 컨설팅 진행 중*이며, 2차 대상기업 10여개사를 추가선정(8월중)하여 컨설팅 예정

* 영업기밀 등 제외한 컨설팅 결과물은 타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핀테크 종합포털에 공개할 예정
- ③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억)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성료('19.5.23~25), 잔여예산(0.5억)은 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④ (국제협력 강화 등, 2억) 하반기 동남아 지역 중심 데모데이 개최(9~10월중)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참고2

핀테크 추경예산 제출현황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핀테크 분야 추경 (총 22.35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제출('19.4.25)

○ 핀테크 추경예산* 통과시 신속한 집행으로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및 오픈뱅킹 보안 등을 적극 지원 예정

※ '19.8.1 국회 본회의 추경안 상정 예정, **국회 논의** 통해 추경규모 **최종 확정**

□ 주요 내용

구 분	금액(억원)		지원 대상	기대 효과
	'19년	추경		
테스트비용 지원*	40	12.5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기존과 동일)	-테스트비용 지원규모를 현실화 함으로써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테스트 실효성 강화
핀테크 보안 지원**	-	9.85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참여 핀테크 기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의 보안 수준 제고를 통해 서비스 성장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금융 소비자 보호
합 계	40	22.35	-	-

* "테스트베드 운영및 참여지원" 내역사업 중 "테스트비용 지원" 내내역사업을 증액편성 (40억→52.5억)

** "핀테크 보안 지원" 내역사업을 신규편성 (0억→9.85억)

□ 국회통과시 집행 계획

① (테스트비용 지원) 테스트비용 지원단가 상향*

* (기존) 78개사, 평균 51백만원 → (변경) 78개사, 평균 67백만원

- (신규 지원) 8월 테스트비용 지원부터 지원금액을 확대

- (1,2차 지원기업) 추가적인 비용지원 수요를 접수*

* 1,2차 테스트비용 지원 심사시 추경 및 추가적인 수요접수 가능성을 既 안내

② (핀테크 보안 지원) 추경 통과와 동시에 신규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지원 추진**

* (오픈뱅킹)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9월초 핀테크 보안 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예정

참고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청방법 >

- (접수기간) '19.7.31(수) ~ (상시접수)
- (접수방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 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 나. 유의사항 >

- 동일 회계연도 내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다. 사후관리 >

①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

②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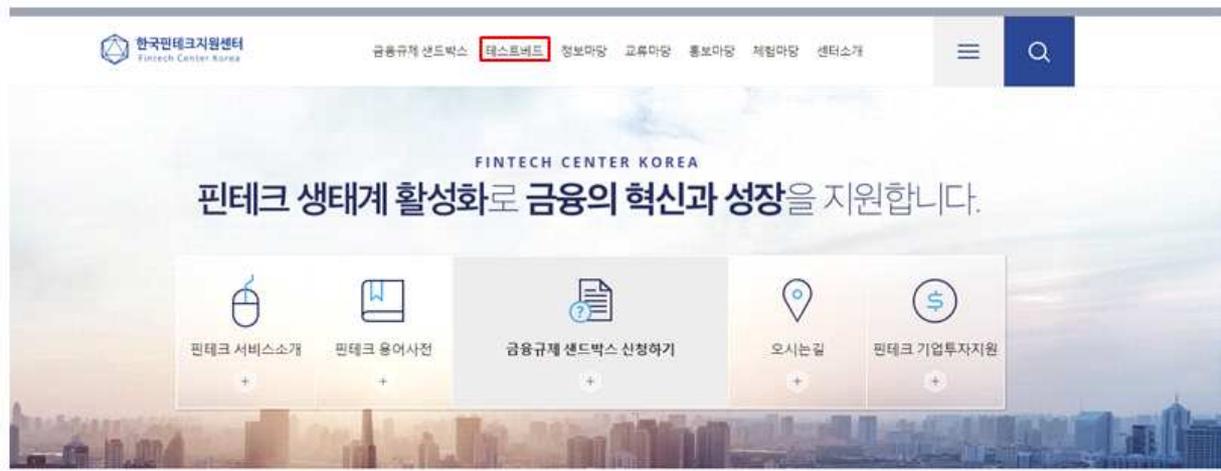
-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③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참고4 세부 신청방법

1. 센터 홈페이지 상단 '테스트베드' 클릭



2. 테스트베드 메뉴 중 '신청하기' 클릭



3. 테스트비용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 후 월별 평가 진행 예정



참고5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 진행 사항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9년 7월까지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차, '19.4.17) 9건 / (2차, '19.5.2) 9건 / (3차, '19.5.15) 8건 / (4차, '19.6.12) 6건 / (5차, '19.6.26) 5건 / (6차, '19.7.25) 5건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대출, 보험, 블록체인, 자본 시장 등)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 6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

** 7월 중 ①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②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③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④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이 출시(총 8건)될 예정

□ 향후 계획

- (샌드박스 운영)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팅→접수·심사의 순으로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 7.15~26일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예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요건 미비사항 설명
-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 컨설팅
- 각 금융협회 : 업권별 금융협회 자율규정 설명 및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 협조

-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2. 지정대리인 제도

※ 핀테크 기업 → 금융위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탁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여 테스트하는 제도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

□ 진행 사항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전인 '18.6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22건의 지정대리인 지정(1차 9건, 2차 7건, 3차 6건)
- 3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해 3.4~5.7일의 기간 동안 신청 접수 받았으며 심사 후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7.18)

□ 향후 계획

- 하반기 내 4차 접수('19.8~10) 및 5차 접수('20.1~3)를 진행할 예정

3. 위탁테스트 제도

※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에 업무위탁 (금융위 승인 ×)

□ 제도 개요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규정(고시) 제32조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실시

□ 진행 사항

- 1,2차 위탁테스트 결과 8건이 테스트 완료하였고 7건 진행 중

□ 향후 계획

- '19.6.28(금) ~ '19.7.29(월) 간 제3차 위탁테스트 접수 중*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

참고6

1차 테스트비용 지원기업(8개사) 개요

순번	구분	신청 기업	금융업 분야 (매칭 금융회사)	서비스 내용
1	지정대리인 (1차)	빅밸류	은행 (KEB하나)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2	지정대리인 (1차)	피노텍	은행 (우리, NH)	대한대출을 처리하는 신·구 은행간 「대출상환금 조회 및 상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한대출 플랫폼
3	지정대리인 (1차)	집펀드	저축은행 (SBI)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개별 동호수 단위 세부정보) 및 AI알고리즘을 활용한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
4	지정대리인 (1차)	스몰 티켓	보험 (한화손보)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고령건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고도화 및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
5	위탁테스트 (2차)	뉴스 젤리	은행 (IBK기업)	금융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시각화 기술의 연동 및 분석
6	위탁테스트 (2차)	오원	카드 (KB카드)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 상품 추진
7	위탁테스트 (2차)	투비콘	보험 (KB생보)	보험 인수 심사 과정에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반문 검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8	위탁테스트 (2차)	해빗 팩토리	보험 (KB생보)	보장 내용, 기간,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겟팅 서비스를 보험설계사용 앱에 탑재

참고7

2차 테스트비용 지원기업(12개사) 개요

순번	구분	신청 기업	금융업 분야 (매칭 금융회사)	서비스 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1차)	루트에너지	P2P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2	혁신금융서비스 (1차)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주)	인슈어테크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3	혁신금융서비스 (1차)	페이플	지급 결제	SMS인증 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4	혁신금융서비스 (2차)	카사코리아	자본시장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5	혁신금융서비스 (2차)	핀다	대출	데이터 기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6	혁신금융서비스 (2차)	핀셋	대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얼트 플랫폼
7	혁신금융서비스 (2차)	핀테크	대출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8	혁신금융서비스 (3차)	페르소나시스템	인슈어테크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
9	혁신금융서비스 (3차)	페이콧	지급 결제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방식의 결제
10	혁신금융서비스 (3차)	한국NFC	지급 결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11	위탁테스트 (2차)	브링프라이스	인슈어테크 (KB손보)	항공권 구매시 부가 보험 상품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12	위탁테스트 (2차)	직뱅크	블록체인 (NH농협)	건축 인테리어 관련 자금을 계좌 예치 후 예치금을 공급자에게 안전하게 지급하는 결제솔루션

1. 루트에너지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

○ 특히, 지역주민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이익 공유

□ (규제특례 신청내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 등) 사업의 규모, 주민참여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의 P2P투자한도* 완화

* 과도한 P2P투자로 인한 손실방지 등을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 (일반 개인) 차입자당 5백만원, P2P업체당 1천만원

- (소득적격 개인) 차입자당 2천만원, P2P업체당 4천만원

□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① (P2P대출 조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사업 중 지역주민 참여 사업

② (투자 한도) 지역주민의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4,000만원, P2P업체당 1억원 등

- 이외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5,000만원

□ (기대효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투자)하는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

○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 창출 기대

□ (향후일정) P2P금융 온라인 플랫폼 개선과 입찰, 계약 등 사업 참여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11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현재 P2P대출 법제화 추진중으로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할 계획
→ 법제정 이후 다른 P2P업체도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한도 적용 가능

2.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 가입
- (규제특례 신청내용) 보험업법 제95조의2의 설명의무 및 제96조의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확인 의무
 -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가입절차를 거치고,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및 공인전자서명 없이 간편하게 가입토록 허용
- (심사결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① 최초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모두 이행
- ② 간편 재가입시에는 직전 체결하였던 여행자보험과 조건 동일 등
- ③ 보험대리점 등록 및 서비스 개시 전 금융위 협의

- (기대효과)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하여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간편·신속한 보험가입 가능
 - 간편한 on/off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추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위험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
- (추진현황) 보험대리점 등록(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후 서비스 개시(6.24)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액 간단보험 가입 절차 관련 규제 완화여부 검토

3. 페이플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규제특례 신청내용) 출금동의 및 진입요건 특례 요청

① (출금동의) 현재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Audio Response System) 방식으로 한정

⇒ SMS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위한 특례 인정 요청

② (진입요건)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의 자본금과 부채/자기자본이 200% 이내, 전산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산 인력의 직무 분리를 요구

⇒ 자본금,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직무분리 요건 예외 특례 요청

□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의 등 요건을 충족.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① (진입요건) '19.7월부터 6개월간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후, 진입요건(자본금, 인력, 직무분리, 재무건전성)을 보완시 서비스 6개월 연장

② (이용한도) 매월 이용자('19.7월 200명 → '20.5월 2,000명 제한), 거래 현황 점검 등

③ (소비자 보호) 제휴 사업자, 소비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통지, 약관 등에 반영

□ (기대효과) 다른 방식에 비해 SMS 인증을 통해 결제가 간편해 지고, 새로운 방식의 안전성을 테스트 하는 계기

○ 진입요건 완화로 소규모 혁신적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

□ (향후일정) 전산설비 마련, 책임보험 가입, 전자금융업 등록 등을 거쳐 '19.7.30일부터 서비스 개시, 6개월 내 진입요건 완비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보안성·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등에 문제 없을 시 규제개선을 검토

4. 카사코리아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 ①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 → ②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을 공모 발행 → ③발행된 수익증권은 신탁회사가 보관,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하는 전자증서를 투자자에 교부 → ④투자자는 신청인이 개설한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매매체결 방식으로 전자증서 거래

□ (규제특례 신청내용)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인정 필요

- ①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110①)
- ② 플랫폼 개설을 위해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373)
- ③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에 대한 예외 인정(§11)

□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 개설 허가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금융질서 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시행한 후 특례인정 여부 검토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금융위와 협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TF'를 구성하고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충분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 운영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점검

□ (기대효과)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보안성·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금년 6~9월 중 모의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모의테스트 실시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용하는 경우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 재상정 추진('19.10월)

5. 핀다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FINDA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 이 중 원하는 대출 조건 선택 및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 **(규제특례 신청내용)**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 주의)해야 함*
 - *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10.4월)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3④
- **(기대효과)**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금리투명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 인하 및 다양한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
- **(향후일정)** 금융회사와의 전문 연동개발 등을 거쳐 7.4 서비스 출시, 향후 1금융권 대출상품을 추가해 확장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

6. 핀셋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 대출 전후 필요한 부가서비스(신용관리, 부채관리)를 추가 제공
- **(규제특례 신청내용)**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 주의)해야 함*
 - *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10.4월)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3④
- **(기대효과)** 개인의 신용과 재무현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
 - 개인별 부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연체 등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 **(향후일정)**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 체결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

7. 핀테크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플랫폼(렌킷)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기타 데이터*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 * 해당차량 사고내역, 운전자 정보, 운전경력 등
- 이후, 소비자 동의 시 금융회사에 동 조건의 확약을 요청
- **(규제특례 신청내용)**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인정 필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 주의)해야 함*
 - *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10.4월)
- **(심사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3④
- **(기대효과)** 소득, 재직 및 자동차 관련서류를 렌킷에서 자동 취득하여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편리성 증대
 - 차량정보와 운전정보 등 분석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 **(향후일정)** 금융회사 제휴 및 API 연동개발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테스트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 고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

8. 페르소나시스템 (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全过程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

* DB 손해보험(주)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 대상 시행 예정

- (규제특례 신청내용)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

-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신청

-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 요건을 충족.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AI를 통한 최대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한정하며 DB손해보험(주)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체결된 계약 전건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 모든 민원, 분쟁 및 소송 등은 DB손해보험(주)가 1차 책임자로 전담처리

- (기대효과)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 보험가입 시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일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자체 테스트 등을 거쳐 '20.1월경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반영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소비자 편의성, 불완전판매 방지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 보험사 1차 책임을 전제로 AI를 통한 모집을 허용

9.페이콕 (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한 것으로,

○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스마트폰 앱)에 신용카드*를 터치(NFC방식)함으로써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 후불교통카드 기능(비접촉식 결제)이 있는 카드, 삼성페이 등

□ (규제특례 신청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4)

○ 신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후 단말기를 등록

- 현재 소프트웨어 단말기(스마트폰 앱)의 보안성 인증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후 단말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의 등 요건을 충족.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 해당 단말기를 통한 결제금액 등 이용현황 보고, 주기적 단말기 관리방안 마련, 가맹점에 단말기 사용 유효기간 고지 등

□ (기대효과) 판매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서비스 제공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의 결제편의 증대

□ (향후일정) 단말기 시험신청 및 테스트를 거쳐 '19.8월에 서비스 출시 예정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 제공, 영세상인 부담경감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

10. 한국NFC (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수납
 - 물리적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NFC 기능을 이용한 결제 앱(소프트웨어단말기)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 **(규제특례 신청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9조, 제27조의4)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호·주소 대신 개인 판매자의 성명·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
 - 신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후 단말기를 등록
 - 현재 소프트웨어 단말기(스마트폰 앱)의 보안성 인증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후 단말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

- **(심사결과)** 혁신성과 규제특례 불가피성 등 요건을 충족.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 미등록 사업자 가입·관리절차 수립, 사업자등록 안내, 불법거래 감시, 가격고지 등

- **(기대효과)**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 제고

- **(향후일정)**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내에 서비스 오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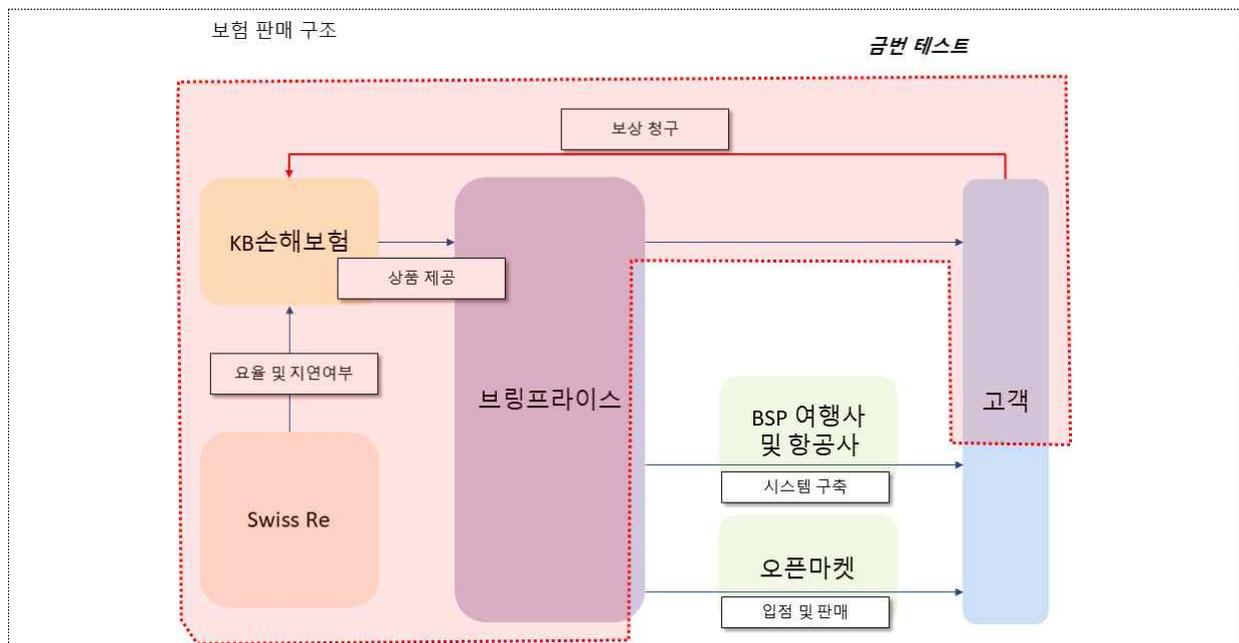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 제공, 영세상인 매출증가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

11. 브링프라이스 - KB손보(2차 위탁테스트)

□ (서비스 주요내용) 항공권 구매시 부가 보험 상품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 브링프라이스의 항공권 가격 비교 서비스에 항공지연 보험서비스를 도입, 항공권 예약시점에 쉽게 항공지연 보험상품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항공지연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보상절차를 간소화



① (혁신성) 항공권 검색 기록을 활용한 가입 절차 및 보상절차 간소화

- 항공권 예약시점에 쉽게 항공지연 보험상품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항공지연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보상절차를 간소화

② (소비자 혜택) 불필요한 가입절차를 최소화하여 편의성 제고

- 원하는 보험상품을 필요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권 구매고객의 가계 부담 최소화 및 선택권 확대

③ (시범운영 대상) 이용자수 200명 규모로 운영 예정

12. 직뱅크-NH농협은행(2차 위탁테스트)

□ (서비스 주요내용) 건축, 인테리어 관련 자금을 계좌 예치 후, 예치금을 공급자에게 안전하게 지급하는 결제솔루션

→ ① '발주자' 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②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면,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게 되는 서비스



① (혁신성) 안심 대체거래 플랫폼을 통한 참여자 보호, 안심결제 가능

- 기존 에스크로 방식 대비 다자간 거래 시 참여자 보호 가능, 선금/중도금/잔금 등 단계별 분할예치 및 지급 가능

② (소비자 혜택)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 주기를 단축(현재 60~150일)하여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 해결

- 또한 거래 은행에만 양도할 수 있던 전자채권(전금법 §2)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 당장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③ (시범운영 대상) 시범기업 20개사 내외로 테스트 진행 중